

##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참여기업 현황

가구, 금속, 광고물, 인쇄, 전기, 전자, 펌프, 엘리베이터, 청소용역 등 다양한 업종의 45개 협동조합, 212개 제품, 2,149개 업체 등록 완료!

( '16.12월 기준, 계속 업데이트 중 )

### - 참여업체 현황 확인

- 공공구매종합정보망 → 정보조회 → 제품목록정보 → 조합공동사업제품

##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활용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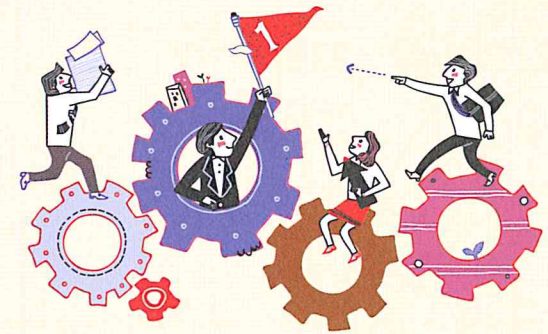
- ① 구매정보망(smpp.go.kr) 로그인 → ② 나의업무
- ③ 공동사업제품추천 → ④ 공동사업 선택
- ⑤ 우선조달요청등록



**문의 ...**  
 제도관련문의 : 02-2124-3241, 2, 6  
 구매정보망(시스템) 이용문의 : 02-2124-3243~4



#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



##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란?

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·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·서비스를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, 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 간 **제한경쟁 가능** ②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업체 추천을 통해 **추천업체 간 지명경쟁 가능한 제도**

- **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** : 제도활용 금액 한도
- 일반제품** : 기재부 고시금액(2.1억원) 미만 제도 활용 가능

## 공동사업이란? (「판로지원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2)

- ① 단체표준인증
- ② 특허권
- ③ 공동상표
- ④ 협업사업
- ⑤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(공통애로기술개발)



## 협동조합 추천요청 방법

① 공공기관에서 직접 협동조합에 추천 요청하는 경우



- 1 공공기관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.go.kr)을 통해 협동조합에 추천 요청
  - 2 추천을 원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은 협동조합에 추천 신청
  - 3 협동조합은 추천을 신청한 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해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공공기관에 추천
  - 4 공공기관은 추천받은 소기업·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등을 통해 지명경쟁 실시 후 계약
- ②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여 협동조합에 추천 요청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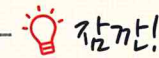


### 공공기관이 조달청 의뢰 시

「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 제2항 또는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하여 '중소기업협동조합과 3인이상의 소기업·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된 물품' 으로 명기하여 의뢰요청

## 근거법령
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2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조의2
- 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」 제43조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제11호, 제22조제12호

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, 공동사업을 수행하고, '직접생산확인증명서'를 보유한 업체만 추천 가능  
 ≡ 직접생산확인제도란,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대기업·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달계약 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

중소기업공동사업제품  
조합 추천제도

